■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77-212.
http://doi.org/10.17948/kcs.2023..98.177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황제국 측의 조문 외교 의례의 비교 탐색*

최종석(崔鍾奭)**

목 차

1. 머리말
2. 명 禮部儀注의 전달·준용과 그 역사적 성격
3. 기복사 파견 여부와 嗣位의 대외적 위상 차이
4. 賜謚 의례의 존부와 그 함의
5. 祭奠 의례에서 賜祭 의례로의 전환
6. 맺음말

국문초록

필자는 그간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외교의례가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전환된 사실과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해 왔는데, 본 작업은 이것의 연장선에서 凶禮에 수록된 외교의례 면에서도 큰 폭의 전환이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國喪 시 외교의례는 책봉국에 행하는 (외교)의례와 이것에 응해서 황제국 측에서 행하는 弔問 (외교)의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고는 이 가운데 국왕의 사망 후 황제국이 행하는 조문 (외교)의례에 초점을 맞춰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를 비교 검토한 연구 결과물이다. 곧 국왕 사후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도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 간에 질적이고 단절적인 차이가 가로놓였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시대적 차이가 말해주는 역사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전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식 절차(의주)에 따라 황제국 측이

* 이 논문은 2022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대 국사학과 부교수.

행하는 弔問 (외교)의례를 치른 것과 달리, 조선(초기)에서는 명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서 국왕의 사망에 조문하는 의례들인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謚 의례를 전례 없이 명 측이 작성하여 조선에 보내준 해당 의주를 토대로 거행한 사실을 부각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특히 명 측의 행보가 조선에 국한된 것으로 사실상 조선 측의 請謚와 告訃에 의해 유발되어 수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을 사실을 주목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려전기에는 起復 의례가 거행되었지만 조선(초기)에는 그렇지 않은 양 시기의 차이를 부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특히 각 시기 국내에서 행해진 '嗣位'가 갖는 대외적 위상의 차이가 기복 의례 시행 여부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주목하였다. 기복 사의 파견 유무 외에 또 다른 이질적인 점은 조선에서는 賜謚 의례가 거행되었으나 고려전기에는 그러지 않은 사실인데, 이러한 차이와 그 맥락을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각 시기 황제가 사망한 국왕을 위해 (사신을 보내) 제사를 행하는 의례라 할 수 있는, 고려전기 祭奠(賜祭) 의례와 조선의 賜祭 의례 간의 여러 이질적 양상을 검토했다. 특히 고려전기 祭奠禮는 상하 차등적 군신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군주 대 군주로서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성격의 의례인 데 비해, 조선의 賜祭儀禮는 군주가 신하를 대상으로 諭示하며 은전을 베푸는 諭祭를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내리는 의례였음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양상의 차이가 시사하는 역사적 함의도 탐색하였다.

주제어: 賜祭儀禮, 賜賻儀禮, 賜謚儀禮, 起復儀禮, 祭奠禮.

1. 머리말

필자는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외교의례가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전환된 사실을 규명해 왔는데,[1] 이에 그치지 않고 凶禮에 수록된 외교의례 역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궤적을 밟아 나갔음을 밝히는 작업을

1) 고려전기에 외교의례는 사실상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로 한정되었으나, 원 복속기에 들어서 외교의례는 원 지방 관부에서 황제에 거행하는 의례와 동기화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달리 말해, 원 복속기에 들어서 외교의례상의 전면적 전환은 원 지방 관부에서 황제에 거행하는 의례가 고려에 적용·활용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원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일부의 지방 관부 의례를 적용하기도,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이후로 충렬왕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원의 지방 관부 의례를 수용하기도 한 데서 외교의례가 전환되었다. 원 복속기에 대폭 전환된 외교의례는 고려말기에 전유·계승의 과정을 통해 그 이후로도 질적 변화 없이 존속하였다.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개설적인 글로는 최종석「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이해 심화를 겸하여」,『한국 문화의 정체성』(김형찬 외), 고려대 출판문화원, 2021을 참고할 수 있다.

하고자 한다. 凶禮에 수록된 외교의례에 있어서도 큰 폭의 전환이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좁게는 조선초기) 각각의 국상 시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 성과가 속속 등장하고는 있으나,[2] 필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국상 시 외교의례를 다룬 성과가 부재한 사실이다. 즉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춰 국상 시의 외교의례를 살폈고, 이로 인해 이 과정에서 타 시기와의 비교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필자의 관심사인, 국상 시 외교의례도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큰 폭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환의 과정과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필자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凶禮에 수록된 외교의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凶禮에 수록된 외교의례에서도 큰 폭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규명하고 그러한 전환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안을 한편의 소논문에서 온전히 다루기에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고도 광범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세 부분(주제)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우선적인 검토 작업은 국왕 사후 책봉국을 상대로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는 일이고, 그다음으로는 국왕 사후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며, 마지막으로는 국상 관련 외교의례가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여 어디로 귀착했는지를 탐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본고는 두 번째 작업 결과물에 해당한다.[3]

---

2)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민, 「고려 國喪에 대한 거란·금·송의 弔問使行 양상과 다층적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 48, 한국중세사학회, 2017; 이승민, 「고려시대 국상 의례와 조문 사행 연구」, 가톨릭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이현진, 「조선전기 국왕 국장(國葬)에서 명(明) 사신의 의례설행과 그 공간」,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윤승희, 「여말선초 對明 外交儀禮 연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윤승희, 「조선초기 賜賻·賜諡·賜祭儀禮와 明禮의 영향」, 『한국학논총』 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3) 첫 번째 작업의 결과는 최종석, 「告哀·稱嗣에서 告訃·請諡·請承襲으로—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책봉국에 행한 외교의례를 비교하며—」, 『한국문화』 9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에

이미 행한 첫 번째 작업의 결과에 따르면, 국왕의 사망 후 책봉국을 상대로 행하는 외교의례는 고려전기에는 告哀, 稱嗣(=告嗣位) 의례인 데 비해, 조선(초기)에는 告訃, 請諡, 請承襲 의례였는데, 두 시기의 의례 사이에는 질적이고 단절적인 차이가 가로놓여있었다. 특히 양 시기 사이에 노정된 이러한 차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 시기 국내에서 행해진 '사위'가 갖는 대외적 위상의 질적 상이함을, 구체적으로는 고려전기에는 국내에서 행해진 사위가 대외적으로도 통고·통용된 데 반해 조선에서는 대외적으로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작업과 짝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본고에서는 국왕 사후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도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에 큰 폭의 시대적 간극이 가로놓였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시대적 차이가 말해주는 역사적 함의를 탐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명 禮部儀注의 전달·준용과 그 역사적 성격

국왕 사후 책봉국에 행하는 (외교)의례뿐만 아니라 이것에 응해서 황제국이 행하는 弔問 (외교)의례에서도,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에 질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4]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명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서 국왕의 사망에 조문하는 의례들인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謚 의례가 명이 조선에 보내준 의주를 토대로 거행된 사실이다.

조선초기에 거행된 賜祭 의례는 명 황제가 使者를 보내 사망한 국왕을 대상으로 上香과 祭酒를 행하고 제문을 읽도록 하는 것이고,[5] 賜謚 의례와 賜賻 의례는 각각 사망한 국왕과 그 후계자를 대상으로 謚號가 적힌 誥命과 賻物을 사여하는 예식인데, 비록 사여 주체가 황제라 하더라도 이들 의례는 조선 땅에서 거행되는 것인 데서, 명이 마련해 준 의주에 따라 해당 의례를 거행한

정리되어 있다.

4) 국왕의 사망 후 책봉국에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 시기에 따른 질적 차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같은 글, 2022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정확히는 제문을 읽는 것은 사신이 직접 하지 않았다. 이 역할을 하는 이는 따로 있었다. 가령 『세종실록』 권135 오례 흉례 의식 賜祭儀에서는 讀祭文官이 이 역할을 하였다.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이러한 모습은 고려전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려전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식 절차(의주)에 따라 황제가 보낸 祭奠使(勅祭使), 慰問使(弔慰使)와 起復使를 맞이하였고, 사신 맞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한 의주에 따라 관련 의례(祭奠, 慰問, 起復)를 행하였을 것이다. 기복사를 맞이하는 예식절차인 「迎北朝起復告勅使儀」[6]는 고려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이 점을 직접 증명해 주고 있다.

태종대에 명이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를 조선 측에 전해주고 이를 준행토록 하자,[7] 조선은 이들 의주에 따라 賜祭・賜賻・賜謚 의례를 거행하였는데,[8] 이는 전례가 없던 일로 동아시아 지평으로 확장해보더라도 유례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일은 고려말에 명이 『蕃國儀注』를 고려에 하사하고 고려・조선은 이를 토대로 각종 對明 외교의례를 거행한 사실을[9] 상기시킨다. 명은 洪武 초기에 유례없이 번국 내에서 번왕이 명(황제)에 거행하는 각종 외교의례의 의주를 직접 작성하여(『번국의주』 작성) 고려에 하사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고려말 이후부터 조선말기까지 각종 외교의례의 예식절차는 기본적으로 명이 하사한 『번국의주』에 수록된 해당 의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이처럼 태종대에 명이 전례 없이 賜祭・賜賻・賜謚 의례의 의주를 조선 측에 전달하여 준행토록 하고 조선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의례를 거행한 일은, 유례없이 『번국의주』를 작성하여 고려에 보내주고 고려・조선이 이것을 토대로 해당 예식을 행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일이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명이 조선 측에 보내주어 준행토록 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는 외국이자 제후국인 조선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니라, 명 황제가 영내 王公大臣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抄錄한 것이란 사실이 주목된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일 기록을[10]

---

6)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
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임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계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갑술.
9) 『번국의주』에 관한 이상의 사실 및 후술할 내용은 최종석, 「고려말기・조선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최종석, 앞의 글, 2021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사는 조문 의례의 과정을 소개한 후, "林觀은 가지고 온 禮部儀注를 禮官에게 주었다"라고 하여 명 사신 禮部郎中 林觀이 조선 측에 禮部儀注를 전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11] 예부의주는 조선이 명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를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그렇게 명명하였을 것이다. 이 구절 다음에는 '禮部爲禮儀事 今於禮制內 抄錄合行儀注 與欽差使臣齎執前去 遵守施行'이라는 구절 및 각각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를 제목으로 하는 비교적 상세한 의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 부분은 명 측이 보낸 외교문서를 옮겨 적은 것에 해당한다. '禮部爲禮儀事' 이하 賜諡儀注까지의 부분이 문서 내용이었음은 무엇보다 '禮部爲禮儀事'라는 어구에서 알 수 있다. '禮部爲禮儀事'는 '예부에서 禮儀의 일을 위해' 또는 '예부에서 禮儀의 일 때문에'로 번역되는 것으로, 문서의 발신자 및 사안에 해당하는 제목을 밝히는 도입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2] 그러하기에 이 어구 뒤에 적시된 '今於禮制內' 이하 賜諡儀注까지의 부분은 문서의 본문에 해당할 것인데,[13] 원본 문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히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을 옮긴 듯하다. 이 가운데 '지금 禮制 중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주를 抄錄하여 欽差使臣에게 주어 보내니 준수하여 시행하라'라는 구절은 발화 주체가 명 예부가 아니라 황제로 보이기에, 명 예부가 보내는 문서에서[14] 황제의 聖旨를 인용한 부분에[15] 해당할 것이다. 요컨대,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1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 "林觀以齎來禮部儀注, 授禮官. 禮部爲禮儀事. 今於禮制內, 抄錄合行儀注, 與欽差使臣齎執前去, 遵守施行." 이 기록 다음에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의 구체적 내용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11) 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禮部郎中 林觀을 보내 致祭하고 賻物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만이 기재되었을 뿐, 林觀 편에 禮部儀注를 조선에 전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太宗文皇帝實錄』 卷81 永樂 6년 7월 壬申. "朝鮮國王李芳遠, 遣陪臣鄭擢, 告其父旦卒, 請謚. 賜謚康獻, 命禮部郎中林觀, 祭之, 賻布帛千匹."

12)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발신자], 爲…事'라는 상용어구를 취한다고 한다. 구범진, 『조선시대의 외교문서』, 한국고전번역원, 2013, 46면 참조.

13) 이렇다고 하면 林觀이 전달한 것은 禮部儀注를 책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禮部儀注, 곧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가 적힌 문서였을 것이다.

14) 발신자는 명 예부이고 문서는 조선국왕에게 보내졌을 것이기에, 문서 종류는 咨文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15) 자문 내에 인용된 황제의 성지는 구어체 白話文으로 기록되는데, 이 구절도 백화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정동훈, 「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전달되는 경로」, 『동양사학연구』 139, 동양사학회, 2017 참조.

중 일부는 명이 보낸 원본 문서 가운데 자질구레한 것은 생략하고, 도입부와 '의주를 보내니 준수하여 시행하라'라는 황제의 성지 및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만을 옮겨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들 의주는 명 영내에서 거행되는 의례의 의주인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16] 조선 측에 전달한 것이다.[17] 의주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賜祭儀注는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와, 賜賻儀注는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와, 賜謚儀注는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와 사실상 동일한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고, 賜祭儀注는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를, 賜賻儀注는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를, 賜謚儀注는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추려 베낀 것이었다. 양자 간에 예식절차가 동일하긴 해도, 조선에 보내준 것은 예식절차의 구체적 내용이 더 소략하고, 또한 喪家에서 행해지는 예식 외의 것, 가령 '사자가 돌아와 황제께 아뢴다(使者回奏)' 등의 의절이 생략되어 있다.

『태종실록』에 수록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는 명 측이 전해준 문서에 기재된 이들 의주를 그대로 옮겨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옮겨적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그치긴 해도 일부 의절을 변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있은 듯하다.[18] 가령 사부 의주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칙서 선독의 의절을 삭제한 듯싶다.[19] 또한, 賜謚儀注를 옮겨적는 과정에서는 불특정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고명인 '皇帝遣臣某冊贈故某官某為某勳某爵'[20]을, 태조에게 내린 시호 고명인 '皇帝遣都知監左少監祁保等頒誥賜故朝鮮國王李諱謚曰康獻'으로 교체한 듯싶다.[21] 이러한 미미한 변개와는 별개로,[22] 준행하도록 하라는 황제의 말마따나 조선이 이들 의주에 의거해서 해당 의례를 거행하였음은 ('一如儀註') 실록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23]

---

16) 『大明集禮』 卷36 凶禮.
17) 윤승희, 앞의 글, 2021, 81면 참조.
18)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윤승희, 앞의 글, 2022, 77-84면 참고.
19) 윤승희, 앞의 글, 2021, 81-83면.
20) 『大明集禮』 卷36 凶禮.
21) 『태종실록』 권1 태종 8년 9월 기사.
22) 이러한 변개는 조선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희박해도 명 측이 했을 수도 있다.

한편 명 황제가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인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抄錄하여 조선 측에 전달하고는 이를 준행토록 한 사실은, 명(황제)이 조선의 (전)국왕을 왕공대신과도 같은 존재로 보아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를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조선을 내복 제후와도 같이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명의 움직임은 명조가 예제 차원에서 천자를 정점으로 한 無外・一視同仁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시대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였을 것이면서도,[24] 그러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진 않았을 것이다.[25] 직접적으로는 조선 측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어 수동적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연설명을 하면 이렇다.

명 측이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를 보내준 행보는 일차적으로는 조선 측의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었을 것이다. 베트남・류큐와 비교해 볼 때 그러하다. 필자가 아는 한, 베트남・류큐를 대상으로 해서는 명이 이들 의주를 전

2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임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계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갑술. 다만 사시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시의주를 토대로 하면서도 시호 고명을 선독하는 의주 내용과 달리 태종은 사신으로부터 고명을 받아 혼자 눈으로 읽었다. 이에 관해서는 윤승희, 앞의 글, 2022, 84-85면 참조.

24)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은 유례없이 확장된 원조의 천하질서를 의식・계승・전유한 것으로,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예적) 지배질서가 외교 무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번국 내에까지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데서, 명 황제가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조선에까지 준용토록 한 조치는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대적 화이질서와 관련해서는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27-4, 東洋史研究会, 1969; 岩井茂樹, 「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85, 東京大学 東洋文化研究所, 2005; David M. Robinson,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檀上寬,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최종석,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참조.

25) 명이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를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한 움직임은 조선의 (전)국왕을 영내의 왕공대신과도 같은 존재로 적극적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이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흉례 관련 의주들 가운데 일부만을 조선 측에 보낸 데서도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가령 황제가 사신을 보내 '皇帝는 某官의 훙서함을 듣고 臣某를 보내 조문한다'라는 식의 황제 명령을 선포하는(宣制曰皇帝聞某官薨遣臣某弔) 의례의 의주인 「遣使弔王公大臣喪儀注」는 조선에 전달하지 않았다.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흉례 관련 일부 의주를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한 움직임을 과장해서 보아서는 곤란한 것이다.

해준 바가 없다. 이들 의주의 사여는 명의 피책봉국・조공국 가운데 조선에 한정된 일이었다.[26] 앞서 언급한 명의 『번국의주』 하사가 고려(조선)를 대상으로 해서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말이다. 유례없이 명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각종 (외교) 의례의 의주(『번국의주』)를 고려에 하사한 게, 고려 측이 먼저 『本國朝賀儀注』라는 본국(고려)에서 명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조하례 의주를 요청한 데 따른 산물인 것과 유사 내지 동일하게,[27] 이 현상 역시 개국 이후 처음으로 국왕의 국상을 당한 조선이 명(황제)을 상대로 告訃와 請謚의 의례를 행한 데서[28] 유발되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명과의 사전 조율 없이 제후로서의 분의를 견지하고 아울러 예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명(황제)을 상대로 告訃와 請謚의 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29] 특히 告訃와 請謚 중에서도 시호의 요청은 명이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를 조선에 전해주는 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군주의 상을 알리는 의례는 조선 외에 여타 피책봉국도 행하곤 했지만,[30] 조선이 여타 국가와는 달리 시호를 요청하자(請謚), 명은 이 요청에 응해 시호를 하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 내에서 거행하는 賜謚 의례의 예식절차(의주)까지 보내준 것이다. 이때 명은 조선 내에서 거행하는 賜謚 의례의 예식절차(의주)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작성된 해당 의주를 베껴 보내주었고, 여기에 더해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賜祭儀注, 賜賻儀注도 베껴 함께 보내주었다. 조선이 告訃와 請謚의 의례를 행한 것에 응해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행하는 의례는 賜謚와 함께

---

26) 소위 '외왕내제'의 방식을 운영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이들 의주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선과 더불어 유이하게 명(황제)을 상대로 망궐례까지 행한 류큐에게조차 이들 의주를 반사하지 않았을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고 하겠다. 류큐의 망궐례에 관해서는 豊見山和行, 『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 吉川弘文館, 2004 참조

27) 최종석, 앞의 글, 2015; 최종석, 앞의 글, 2021.

28)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정축. 당시 請承襲의 의례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국왕인 태종이 이미 책봉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9)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앞의 글, 2022 참조.

30) 가령 베트남은 명(황제)에 告哀(告訃) 사신을 파견하곤 하였다. 『太祖高皇帝實錄』 卷51 洪武 3년 4월 壬申; 『太祖高皇帝實錄』 卷244 洪武 29년 2월 壬寅; 『武宗毅皇帝實錄』 卷7 弘治 18년 11월 丙午; 『世宗肅皇帝實錄』 卷331 嘉靖 26년 12월 甲寅. 베트남 외에도 류큐, 일본, 暹羅 또한 告訃使를 파견하였음이 확인된다. 류큐, 일본, 暹羅 고부사 파견 사례는 각각 다음과 같다. 『太宗文皇帝實錄』 卷28 永樂 2년 2월 壬辰; 『太宗文皇帝實錄』 卷86 永樂 6년 12월 庚寅; 『太宗文皇帝實錄』 卷176 永樂 14년 5월 壬辰.

賜祭, 賜賻 의례였기에, 이들 의례의 의주도 함께 챙겨 보내주었을 것이다.

명이 賜謚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조선에 보내주었기는 해도 이 일은 애초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보내준 의주가 조선, 넓게는 蕃國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를 抄錄한 것이라는 데서 그렇다.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 차원의 일이었을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는 홍무 3년에 편찬된 『대명집례』에 이미 수록되고 있던 데서, 이들 의주가 마련되고서 한참 뒤에야 그 抄錄 버전이 조선 측에 전달된 셈이어서, 이는 명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를 마련할 당시에 이를 활용한 抄錄 버전을 만들어 조선 등의 번국에 전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사실을 시사한다.

이들 사실로 보아 명 측은 당초 賜謚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조선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나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조선이 개국 후 처음으로 청시 의례를 행하자 이것에 응해서 사신을 보내 시호를 내렸고 이에 그치지 않고 종래와 달리 급하게 이 의례를 실행하는 절차(의주)로 기성의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초록하여 사신 편에 조선에 전해주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과정에서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와 마찬가지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의주인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의 抄錄도 함께 마련하여 보내주었을 것이다.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임기응변 식으로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추려 베낀 것을 마련한 듯싶다.

이처럼 명이 賜謚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조선에 보내준 것은 조선에 의해 견인되었고, 이들 의주의 마련이 애초부터 조선을 포함한 蕃國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의주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조선 외에는 이들 의주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베트남과 류큐 등은 (고려)조선과 달리 명 측에 시호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명은 베트남·류큐의 사망한 군주를

상대로 시호를 내려주지 않았다. 명은 베트남・류큐가 시호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賜諡를 강행하지 않았고, '사시'를 반드시 구현하고자 해서 베트남・류큐가 시호를 요청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았다. 명은 베트남・류큐가 시호를 요청하지 않는 것을 방관하였고, 이와 맞물려 베트남・류큐의 사망한 군주를 상대로 시호를 내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베트남・류큐를 상대로 賜諡儀注를 전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트남・류큐는 고부(고애) 의례를 거행했기에, 명은 베트남・류큐에 사신을 보내 賜祭와 賜賻 의례를 거행토록 했지만, 베트남・류큐에 賜祭儀注, 賜賻儀注를 보내주어 이를 준행토록 하지는 않았다.[31] 이는 명이 솔선하여 시호를 요청하는 조선과 달리 베트남・류큐를 문명・예의 가치를 공유하는 共鳴의 상대로 보지 않은 데서였을 것이다.[32]

한편 명 측이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일은 조선의 請諡에서 유발되었을 것이긴 해도 이 과정에서 명 측의 의지와 판단이 개입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조선 측이 해당 의주의 반사를 명에 요청하였음은 어디에서도

31) 賜諡儀注를 제외하고 賜祭儀注, 賜賻儀注만을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명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32) 명이 賜諡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조선에 국한해서 보내준 일은, 조선의 외교의례가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를 토대로 거행되고 있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당시에 명은 『번국의주』를 하사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을 테지만, 조선의 외교의례는 『번국의주』를 토대로 거행되고 있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기본적으로 명의 의례와 부합하였다. 명은 홍무 2년(1369) 9월에 각종 蕃國禮를 마련하였고, 그 이후 수정・보완을 하여 『大明集禮』 빈례를 완성하였는데, 『번국의주』는 『大明集禮』 빈례의 완성 과정에서 명이 고려의 요청에 응해 번국 내에서 번국이 주체가 되어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인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만을 수록하여 만든 책자였다. 그러다 보니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는 『大明集禮』 빈례의 해당 의주와 사실상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大明集禮』는 편성 후 곧바로 禁中에 보관되었고, 간행은 嘉靖帝 때에 이루어 탓에, 명 측이 실제로 활용한 의례(의주)는 『諸司職掌』과 이를 계승・보완한 『大明會典』에 수록된 각종 蕃國 관련 의례였지만, 이들은 『大明集禮』 빈례와 사실상 다르지 않았다. 이는 이들 의례가 『大明集禮』 빈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진 않았어도, 『大明集禮』 빈례와 마찬가지로 홍무 2년(1369) 9월에 마련된 각종 蕃國禮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데서였다. 『번국의주』가 『대명집례』는 물론이요, 『諸司職掌』과 『大明會典』에 수록된 각종 蕃國 관련 의례와도 사실상 동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상은 최종석, 앞의 글, 2015; 郭嘉輝, 「天下通禮 : 明代賓禮的流傳與域外實踐的紛爭」, 『臺灣師大歷史學報』 59,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學系, 2018 참조. 이처럼 조선의 외교의례는 『번국의주』를 토대로 거행되고 있다 보니, 조선의 행보는 명 측에게 문명・예의 가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명은 조선 내에서 거행하는 賜諡 의례의 예식절차(의주)까지 보내주었을 것이다. 물론 명 측에게 문명・예의 가치에 부합하는 모습은 외교의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구현되고 있었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는다.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것은 어디까지나 명의 판단과 의지에서였을 것이다. 조선의 시호 요청에 응해 시호를 하사한다고 해도, 명 측이 관련 의주를 직접 작성하여 보내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데서도 그러하다. 사신을 보내 시호만 하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고려말에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33] 결국,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일은 조선에 의해 견인되었다고 해도, 의주를 마련하여 조선 측에 보내겠다는 것,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작성된 기성의 의주를 베껴 보내겠다는 것, 賜諡儀注 외에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도 함께 보내겠다는 것 등은 명 측의 의지와 판단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러한 의지의 구현이 영락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황제)을 상대로 告訃와 請諡의 의례를 행한 것은 고려 우왕대(홍무제 시기)에 이미 있었으나,[34] 이때와 달리 조선 개국 후 처음 있은 국상에서 명이 조선 측의 告訃와 請諡 의례에 유발되어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를 보낸 행위는, 고려-명 간 갈등이 고조된 우왕대와 달리 태종대(영락제 시기) 당시에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데서[35] 가능하였을 것이다. 특히 영락제가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일은 영락제 시기에 유별나게도 그간 시호를 준 적이 없던 외국의 군주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시호를 하사한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예적) 지배질서가 외교 무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번국 내에까지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영락제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자의 천하 지배 면에서 주원장을 넘어 더 나아가 쿠빌라이까지 넘고자 한 데서 이루어졌을 것이다.[36]

단 이러한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한 일은 아니었을

33) 『太祖高皇帝實錄』 卷174 洪武 18년 7월 甲戌;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1년 9월 을해.
34) 『太祖高皇帝實錄』 卷111 洪武 10년 1월 丁未; 『太祖高皇帝實錄』 卷174 洪武 18년 7월 甲戌.
35) 우왕대와 태종대의 한중 관계에 관해서는 각각 다음 저서를 참조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려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6) 檀上寬, 『天下と天朝の中國史』, 岩波新書, 2016, 211-217면 참조.

것이다. 명은 無外・一視同仁의 질서를 지면상에 실현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와 맞물려 武威를 동원해서라도 현실 세계에 이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37] 현실 차원에서의 구현은 문명・예의 가치를 공유하는 共鳴의 상대를 필요로 하였다. 당시에는 홍무제 시기와 달리 조선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 있었고 조선 측은 예의 가치를 견지한 채 명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기에, 명(영락제)은 조선이 請諡 의례를 행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시호를 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과 달리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주었을 것이다.

3. 기복사 파견 여부와 嗣位의 대외적 위상 차이

책봉국의 조문 관련 외교의례의 측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사이의 질적 변화는, 고려전기와 달리 명 측이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의주를 추려 베껴 조선에 보내주고 조선은 이에 따라 해당 의례를 거행한 사실로 국한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변화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고려전기에는 起復 의례가 보이나 조선(초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38]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기복 의례에 해당하는 의례(의주)는 「迎北朝起復告勅使儀」인데, 조선에서 이에 상응하는 의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고 넘어가기에는 고려전기에는 책봉국인 요・금이 사신을 보내 起復을 명하면서 官告를 통해 고려 군주를 일차적으로 책봉한다고도 볼 수 있어, 기복 의례가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책봉 의례에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곧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려전기에 제전(칙제), 조위(위문)와 함께 조문 의례로 거행되곤 한 기복은 '고려 국왕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조문과 책봉 사이의 외교의례로서 책봉

37) 예제를 매개로 한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이 사실상 지면상의 구현에 만족한 점에 관해서는 최종석,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 『한국문화』 8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b, 234-235면 참조.

38) 본고에서는 이승민의 연구에서와같이 기복 의례를 넓은 의미의 조문 외교의례의 일환으로 보고 검토하려 한다. 이승민, 앞의 글, 2018 참조.

전까지 정치 외교적 틈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여,[39] 제전(칙제), 조위(위문)와 함께 거행되곤 한 기복 의례가 조선시대에 청승습에 응해서 이루어진 조선왕에 대한 책봉 의례(고명을 줌)에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40]

책봉국인 요・금은 고려군주에게 官告를 주면서 起復하도록 했는데, 기복사가 전달했던 관고로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驃騎大將軍檢校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과 食邑 7,000호와 食實封 700호로 기복하게 한다. 담당 관청에게 날짜를 택하여 예를 갖추어 冊命할 것이다"[41]라고 하는 기록이다. 이 기록 등에 의거해서 책봉국이 기복을 통해 '고려국왕'의 위호를 주었다고 이해되고 있다.[42] '거란이 고려국왕을 책봉할 때에 喪期를 마치기 이전에는 관고를 통해 국왕으로 일단 인정했다가 상기를 마친 후에 정식으로 책(冊)을 내려 책봉하였다'[43]라고 한 언설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복 의례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조선의 책봉 의례(고명 수여)에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국왕 사후 책봉국에 행한 告訃・請謚・請承襲이라는 일련의 조합 가운데 하나인 請承襲 의례에 응해서 책봉국인 명은 조문 사절과 함께 고명을 전하는 책봉 사신을 함께 보냈는데,[44] 고려전기에는 사실상 이와 다름없이 조문과 함께 기복(관고 전달)이 행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조선에서는 기복(사)은 없었어도 사실상 고명 수여가 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복(관고)을 통해 고려국왕의 위호를 주었다', '喪期를 마치기 이전에는 관고를 통해 국왕으로 일단 인정했다' 식의 국왕 책봉은 조선의 책봉(고명을 줌)과는 이질적이었다. 우선 고려전기 당시에 기복사는 전왕의 조문을

39) 이승민, 앞의 글, 2018 참조.
40) 이승민은 '기복이 책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치・외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려전기에 행해진 기복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이승민, 같은 글, 2018, 163면.
41) 『고려사』 권10 세가10 헌종 즉위년 12월 병술.
42) 이승민, 같은 글, 2018, 156면.
43) 김윤정, 「고려후기 사여관복(賜與冠服) 행례와 예제(禮制) 질서의 형성」,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 479면. 이는 정동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였다. 정동훈, 「冊과 誥命—고려시대 국왕 책봉문서」, 『사학연구』 126, 한국사학회, 2017, 175-180면.
44) 조문과 책봉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賜祭와 冊封 가운데 어느 의례를 먼저 할지를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 연산 1년 5월 정미; 『연산군일기』 권5 연산 1년 5월 신해 참조.

위한 사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오는 사신이 아니었다.[45] 이 점은 조선시대에 고명을 전하는 사신이 일반적으로 오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우선, 기복사는 왕위가 부자로 계승되는 경우에 한해 왔다. '기복은 삼년상으로 인한 解官을 전제로 하기에' 그러했다.[46] 주지하듯 고려전기에 부자 계승은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국왕이 사망했다고 해도 기복사가 오지 않은 경우는 드물지 않았을 것이다. 기복사가 오지 않은 경우 '고려국왕'으로 기복하라는 관고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복사는 왕위가 부자로 계승된 시에도 오지 않기도 했으며,[47] 더욱이 고려에 기복사가 온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때는 개국 후 250년도 지나서였다.[48] 이에 더해서 금은 요과 달리 고려국왕으로 기복시키지도 않았다.[49] 이들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고려전기 동안 기복사가 파견되어 '기복(관고)을 통해 고려국왕의 위호를 준'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한편 왕위 계승이 부자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가령 형제 계승) 喪期가 짧기에 기복사 대신에 책봉사가 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고려초기를 제외하고는 책봉사는 조문 사절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늦게 따로 왔다.[50] 이와 달리 조선에서는 고명의 전달(책봉)이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것은 조문과 함께 이루어졌다. 조선은 명(황제)을 상대로 국왕의 부고를 알리면서 동시에 承襲을 요청하였고, 명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조문과 고명 전달을 함께 진행했다.

고려전기의 기복(관고 전달)을 조선의 책봉(고명 수여)과 비교할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기복사가 모후의 사망 시에도 온 점이다. 가령 예종의 모후인 명의태후가 사망하자 요는 기복사를 보내왔다.[51] 국왕이 교체되는

45) 고려전기에 전왕의 조문을 위한 사행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졌다. 이승민, 앞의 글, 2018, 145-146면 참조.
46) 이승민, 같은 글, 2018, 157면.
47) 고려나 책봉국의 사정에 따라 부자 간 왕위계승임에도 기복사가 오지 않는(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예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한 후가 그러하였다.
48)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11월 병오. "遼遣落起復使高州管內觀察使耶律盛來". 일반적으로 기복사를 보내고 이후 기복을 파하는 落起復使를 보내는 점으로 미루어, 이때 앞서 기복사가 파견되었을 것이다. 이승민, 같은 글, 2018, 156면 참조.
49) 이승민, 같은 글, 2018, 162면.
50) 이승민, 같은 글, 2018, 145-146면의 〈표 14〉 고려 전·중기 조문 사행 참조.

때에 국한해서 오는 게 아닌 것이다.[52] 요·금 측은 국왕이 모후의 사망 시에도 삼년상을 치른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요·금 측은 사신을 보내 관고를 주어 기복하도록 하였을 것인데, 국왕이 이미 책봉을 받았다면, 책봉되었던 관작은 解官을 전제로 하여 관고를 통해 회복되었을 것이다.[53] 이러한 사실은 고려전기의 기복(관고 전달)이 결과적으로는 국왕으로 일단 인정하거나 '고려국왕'의 위호를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도, 취지는 국왕이 친상으로 인해 解官되었다고 전제하고 奪情起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책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시도인 것이다.

특히 고려전기에 기복 운용이 해관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모후 사망 시에도 책봉국은 해관(책봉 시 수여된 官爵의 해임)을 전제로 관고를 내려 기존의 관작으로 기복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父王의 사망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새 국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진 기복(관고)이 전제로 한 '解官'에서 해임된 '官'은 무엇을 가리켰을까? 국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봉 이전 시기이기에 책봉 관작은 분명 아니고, 관고 전달 이전이기에 책봉국이 관고를 통해 부여한 관작도 아닐 것이다. 해임된 '관'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당시 고려왕이 책봉국을 상대로 稱嗣(告嗣位) 의례를 거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전기에 실행된 稱嗣(告嗣位)는 새로운 군주의 즉위 곧 嗣位의 사실을 책봉국에 알리는 의례였다. 책봉국을 상대로 한 告嗣位 의례의 실행은 국내에서 사위한 군주가 대외에까지(황제를 대상으로 해서까지) 이 사실을 표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봉국을 상대로 한 告嗣位 의례의 실행은 嗣王이 국내에서 행해진 '사위'를 통해서 책봉국(황제국)을 상대로도 군주의 위상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4] 告嗣位 의례 실행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책봉국 측이 상정한 父王 사망 시의 해관은 대외로

51)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8년 1월 무인.
52)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왕위교체는 부자계승에 국한되었다.
53) 명의태후 사망 후 기복사가 전한 告身에서 고려국왕은 '前推誠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 食邑三千戶 食實封一千五百戶王俁'라고 기재되고 있어, 요의 가정 속에서는 기복 전 예종은 책봉 받은 관작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54) 최종석, 앞의 글, 2022 참조.

까지 嗣位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55]

조선에서는 사위 의례를 행했기는 하나, 명・청(황제)을 상대로 해서는 조선 내에서 사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請承襲 의례를 거행하였다. 請承襲 의례는 의정부 혹은 전왕의 비가 책봉국(황제)을 상대로 전왕의 후계자만이 있을 뿐 아직 군주의 자리는 비어 있다고 상정한 채 훙서한 전왕의 후계자(세자)인 아무개를 책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례였다.[56] 명・청(황제)을 상대로는 책봉 전까지는 군주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어서, 설령 명이 기복사를 파견하여 '왕위'를 奪情起復을 하고자 해도 親喪으로 인해 해임될만한 왕위는 부재하였을 것이다. '청승습' 의례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다 보니 사망 직후 告訃 의례와 함께 이루어졌고, 명 또한 이러한 '청승습' 의례에 응해 전왕을 조문하는 사신과 함께 책봉사를 보내 후계자가 '조선국왕' 位를 승습할 수 있도록 했다.[57] 조선(초기) 당시에는 고려전기에서와 같은 기복사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다.

4. 賜諡 의례의 존부와 그 함의

기복사의 파견 유무 외에 또 다른 이질적인 점은 조선에서는 賜諡 의례가 거행되었으나 고려전기에는 그러지 않은 사실이다. 조선초기에 賜諡 의례는 조선 측의 국왕 시호 요청에 응해 명이 국왕 시호를 하사한 데 따라 거행된 의례인 데서, 고려전기에는 국왕 시호 요청이 없었기에 책봉국 측은 시호를 하사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사시의례도 거행될 수 없었다.

---

55) 물론 실제로는 고려 내에서는 부왕의 사망 시에도, 모후의 사망 시에도 국왕의 '해관'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해관'은 요・금과의 외교 질서 내에서 가정되었을 따름이었다. 졸고에서 밝혔듯이, 고려 내에서는 자체의 질서에 의해 왕위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실은 요・금에 통고되었으면서도(告嗣位), 이와 차원을 달리하여 고려의 군주는 대국인 요・금과 상하 차등의 예적 군신 관계를 맺기 위해 嗣位를 통보하면서도 '權知國事', '假守宗祏' 식으로 열위에 있는 자신의 예적 위상을 드러내야 했고 종국에는 책봉을 받아야 했다. 최종석, 앞의 글, 2022 참조. 요・금 측도 우위에서 상하 차등의 예적 군신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기 위해 실제로 '해관'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설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해관'을 전제로 기복을 명하여 기복해서 수행해야 할 관작을 내리고 이후 喪이 끝났다는 생각되는 시점에 落起復을 명하고 그 이후에 책봉사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56) 최종석, 앞의 글, 2022 참조.

57) 고려전기에도 책봉사가 왔으나, 당시 책봉사는 조문 사신이 왔을 시가 아니라 그보다 뒤에 이루어졌다(상이 끝난 이후). 곧 조문 의례와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려전기에는 請諡 의례가 행해지지 않았다. 請諡는 충렬왕의 사망 후 충선왕이 원(황제)에 大行王인 충렬왕의 시호를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58] 고려전기 당시에 책봉국을 상대로 훙서한 국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의례는 선례도 없고 했기에, 고려는 이를 행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고,[59] 황제국・책봉국조차 외국이자 조공국・피책봉국이 시호를 요청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60] 요컨대, 고려전기에는 고려가 책봉국에 국왕 시호를 요청하지 않았고, 책봉국 측도 국왕 시호를 사여하지 않았다. 賜諡 의례가 거행될 틈이 없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賜諡 의례는 국왕이 代受誥命者로서 시호 고명을 받고, 이를 靈座 앞에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61] 기본적으로는 명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抄錄하여 보내준 의주를 토대로 거행되었다.

태종대 賜諡 의례의 예식절차(의주)는 명 측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抄錄하여 보내준 것으로 조선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기에,[62] 당시 賜諡 의례는 명이 전해 준 賜諡儀注대로 거행되었을 것이다.[63] 다만 명이 전해 준 賜諡儀注는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한 내용적으로 소략하였기에, 조선 측은 이를 토대로 예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연과 해석을 발휘할 여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외에 조선의 사정을 반영하여 賜諡儀注와 달리 진행하는 의절도 있었다. 가령 賜諡儀注와 달리 시호고명을 宣讀하는[64] 절차 없이 태종은 시호고명을 사신으로부터 건네받아 보았다.[65]

---

58)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10월 병신.

59) 당시 請諡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請諡 여부를 놓고 시호를 요청하지 않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請諡 여부를 놓고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였을 것이다.

60) 안기혁, 「여말선초 대중국관계와 국왕시호(國王諡號)」,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최종석, 앞의 글, 2022.

6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

62)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 명 측이 전해 준 외교문서에 적힌 賜諡儀注를 옮기면서 일부 의절을 변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였을 수 있다.

6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갑술.

64) 賜諡儀注에는 다음과 같이 선독하는 절차가 있었다.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 "使者稱有制, 贊跪, 代受誥者跪. 使者宣制曰, (…) 宣訖."

6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갑술. "使臣以誥文授上, 上覽訖." 이에 관해서는 윤승희, 앞의 글, 2022, 84-85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이후로는 명 측이 전해준 賜諡儀注를 토대로 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고 상세히 하는 의주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련한 의주에 의거해서 賜諡儀禮를 거행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는 명 측이 賜諡儀注와 함께 전해준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의 작업이 이루어졌다.[66] 간략히 그 정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종 5년에는 태종의 국상을 계기로 종래의 賜諡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 賜賻儀注를 정비하였다.[67] 세종 5년에 정비된 賜諡儀注를 위시한 賜祭儀注, 賜賻儀注는 명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 각각을 抄錄하여 전해 준 것인 태종대의 賜諡儀注, 賜祭儀注, 賜賻儀注와 비교해서 내용이 더 상세하다. 태종대의 것은 매우 소략하고 사실상 명 영내의 王公大臣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니 조선의 현실과 괴리되기도 했는데, 세종 5년에 작성된 賜諡儀注를 위시한 賜祭儀注, 賜賻儀注는 조만간 치러야 할 이들 의례의 실제 거행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의주를 구체화한 것이었다.[68] 단 구체화 작업은 명이 전달한 의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종대의 것과 세종대에 작성된 이들 의주가 동질적이었을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세종 5년에 작성된 賜諡儀注를 위시한 이들 의주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활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일회적 사용을 위해 마련된 듯싶다. 가령 당시 명은 태조의 상 때와 달리 사부의례를 위한 칙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조선 조정은 칙서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賜賻儀注를 작성하였다.[69] 지속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면, 『세종실록』 오례에서와 같이 細註 등을 이용해서라도 칙서가 있는 경우를 반영하였을 것이다.[70] 이 건에 한정

66) 이하에서는 조선초기 동안 賜諡儀注의 보완・상세화 작업을 간략히 검토할 것인데,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도 함께 다룰 것이다.

67)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4월 계축. 더 나아가 고명・제문・부물을 맞이하는 의주인 「迎諡誥祭文賻物儀註」를 자체적으로 상정하였다.

68) 구체화하였으면서도 세 의주에는 공히 의례 당일에 앞서 행하는 예식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69) 윤승희, 앞의 글, 2021, 101-103면.

70) 한편 새로이 확인되는 「迎諡誥祭文賻物儀註」는 국왕이 교외에 나가 시호가 적힌 고명・제문・부물을

된 의주 마련인 것이다. 이는 賜賻儀注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작업한 세 의주에 공히 해당하였을 것이다.

이 이후에 작성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凶禮에는[71] 賜諡儀를 위시하여 賜祭儀, 賜賻儀가 수록되어 있다.[72] 賜諡儀를 비롯한 賜祭儀, 賜賻儀는 각각 세종 5년에 제작된 賜諡儀注 賜祭儀注, 賜賻儀注를 상세히 한 것이었다.[73] 세종 5년에 작성된 이들 의주는 의주에만 기대어 예식을 거행해도 좋을 정도로 상세하지는 못한 데 비해,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것들은 충분히 상세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74] 그렇지만 구체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전의 것과 동질적이었으니, 의례 절차의 기본 구성뿐만 아니라 각 부분 내 세부 절차에서조차 사실상 다른 점은 없었다.[75] 한편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賜諡儀를 비롯한 賜祭儀, 賜賻儀는 기왕의 의주들을 상세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변수를 감안·반영하여 작성되었다.[76] 세종 5년에 작성된 의주들과 달리 일회용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다.

맞이하여 태평관으로 이동한 뒤 봉안하는 예를 행하는 예식절차에 관한 것이다.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4월 계축; 윤승희, 앞의 글, 2021, 98면 참조. 이에 해당하는 예식절차는 조선 내에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나 명 측이 전해준 의주로는 전혀 충족되지 않기에, 조선은 직접 「迎諡誥祭文賻物儀註」를 작성하여 불비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迎諡誥祭文賻物儀註」에 수록된 기본적인 예식절차는 태종대에도 행해졌을 것이나, 태종대에는 의주 문서로 작성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와 달리 세종대에는 의주 문서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迎諡誥祭文賻物儀註」도 함께 마련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와 마찬가지로 곧 치러질 해당 예식의 실제 구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이 역시도 일회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71) 명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의 사망에 弔問하는 의례의 측면에서 『국조오례의』는 『세종실록』 오례와 거의 유사하다. 이현진, 앞의 글, 2018, 124면 참조.

72) 『세종실록』 권135 오례 흉례의식의 迎賜諡祭及弔賻儀, 賜諡儀, 賜賻儀, 賜祭儀; 『國朝五禮儀』 권8, 흉례의 迎賜諡祭及弔賻儀, 賜諡儀, 賜賻儀, 賜祭儀. 여기에는 諡誥·祭文·賻物을 모화관에서 맞이하여 태평관에 봉안하는 의례인 迎賜諡祭及弔賻儀도 수록하고 있다.

73) 迎賜諡祭及弔賻儀는 동년에 마련된 「迎諡誥祭文賻物儀註」를 보완한 것이다.

74)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절차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윤승희, 앞의 글, 2022, 89-92면 참조.

75) 이러한 모습은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拜表儀가 명이 하사한 『번국의주』 수록 의주를 구체화, 상세화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종석,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 호서사학회, 2018a 참조.

76) 여기서는 고려전기의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조선의 賜諡儀禮, 賜祭儀禮, 賜賻儀禮가 줄곧 명이 보낸 의주를 토대로 거행된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들 의주의 작성 추이를 다루었다. 이들 의주의 정비 추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승희, 앞의 글, 2022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처럼 태종대에는 명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抄錄하여 전해 준 것인 賜謚儀注에 따라 예식을 치렀고, 세종 5년에는 곧 치러야 할 사시의례의 실제 거행을 염두에 두고 사시의주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의례를 실행하였다. 세종 5년에 작성된 賜謚儀注도 태종대의 것과 같이 명이 전해준 의주를 바탕으로 한 데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賜謚儀 역시 명이 전해준 의주를 토대로 한 데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 의주에만 기대어 예식을 거행해도 좋을 만큼 훨씬 구체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에서 사시 의례 거행의 역사적 의미를 앞선 검토를 참고해서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의 사시의례가 기본적으로는 태종대 이래로 명이 전달한 賜謚儀注를 토대로 거행된 사실은, 명(황제) 입장에서 보면, 영내의 王公大臣을 대상으로 시호를 하사하는 의례(의주)인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외국이자 제후국인 조선에까지 구현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명(황제)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추려 베껴 조선에 전달하고서는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은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조선의 請謚에 견인되어 임기응변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전례 없는 현상으로 시대성을 노정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달리 말해, 이 현상은 소극적일 순 있어도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 측의 의도와는 별개로 천자를 정점이자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 속에서 문명 중화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후 분의를 견지하기 위해,[77]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초록하여 전달한 의주를 준용하여 賜謚 의례를 실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명의 의주를 준용하였기에 단순히 명이 전해준 의주를 준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의주를 구체화하고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예에 더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을 것이다.

77) 당시의 이러한 지적 분위기에 관한 개설적 정리로는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사, 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5. 祭奠 의례에서 賜祭 의례로의 전환

각 시기 황제가 사망한 국왕을 위해 (사신을 보내) 제사를 행하는 의례라 할 수 있는, 고려전기 祭奠(勅祭) 의례와 조선의 賜祭 의례 또한 여러모로 상호 이질적이었다. 얼핏 보면 양자는 동일한 듯싶지만, 여기에서도 시대적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뚜렷이 차이가 나거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위주로 양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78]

먼저, 조선(초기)에서는 사제의례와 사부의례가 구분된 데 비해, 고려전기에는 제전례 내에 사부의례까지 포함되었다.

조선(초기)의 경우 사제의례와 사부의례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의주가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사제의주와 사부의주), 의례 거행의 장소와 날짜도 상이하였다.[79] 완전히 별개의 의례인 것이다. 가령 태조의 사망으로 태종대에 행해진 사제의례는 태종 8년 9월 임신일 문소전에서 거행된 데[80] 비해, 사부의례는 그다음 날인 계유일에 왕궁의 정전 곧 경복궁의 근정전 혹은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81] 사제의례와 사부의례 간에 예식 거행의 장소가 상이한 것은 각 예식의 토대가 되는 명의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賜祭儀注)와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賜賻儀注)에서 예식이 거행되는 장소가 喪家 내의 靈座와 正廳으로 다른 데서였을 것이다.[82] 조선은 명이 전달한 본래 王公大臣을 대상으로 한 의주를 준용하면서도 외국이자 제후국의 위상과 실정에 맞게 변용해야 했기에, 喪家를 궁궐에, 靈座가 설치된 곳을 선왕의 혼이 깃든 신주[우주]가 봉안되어 있는 혼전에[83], 正廳이 있는 곳을 정전인 근정전 혹은 인정전에 비정하였을 것이다.

---

78)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해서 일일이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79) 다만 예종 1년에 세조의 훙서로 인해 명 사신이 설행하는 의례는 전과 달리 같은 날에 사제의례, 사시의례, 사부의례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치러졌다.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 윤2월 신미. 이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윤승희, 앞의 글, 2022, 94-99면 참조.
8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임신.
8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계유.
8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기사에 수록된 賜祭儀注와 賜賻儀注 참조.
83) 이현진, 앞의 글, 2018, 129면.

고려전기 祭奠禮 절차는『고려사』예지 흉례에 수록된「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에 따르면[84] 다음과 같은데, 贈賻詔書를 받는 의절이 祭奠禮 중에 있었다. 즉 祭奠使는 魂殿에서 사망한 전왕을 대상으로 향을 피우고 술을 땅에 부은 후 祝文을 읽고 그것이 끝난 후 嗣王을 대상으로 칙서를 구두로 전한다. 그러고서 사왕은 사신으로부터 贈賻詔書를 받는다. 이를 끝으로 祭奠禮는 종료된다.[85] 고려전기에는 祭奠禮 내에 사부의례가 포함된 것이다. 조선으로 치자면, 사제의례와 사부의례가 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치러진 셈이다.[86]

그런데『고려사』예지에 수록된「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는 예식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긴 하나 文宗의 국상 시에 송 황제가 사신을 보내 행한 예식이어서, 요・금의 제전례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탓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순 없어도, 요・금의 제전례도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은 제전사와 조위사를 보내 각각 제전과 조위 의례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요・금도 제전사(칙제사)와 조위사(위문사)를 고려에 파견하였다.[87] 요・금 사신이 와서 행한 제전례(칙제례)에서도 사신은 贈賻詔書를 건넸을 것이다.

한편 고려전기 祭奠禮와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의례의 성격 면에서도 현저히 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려전기 祭奠禮는 기본적으로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성격의 의례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상하 차등적 관계를 구현하면서도—,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자신의 신하에게 행한 황제의 은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84)『고려사』권64 지18 예6 흉례 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

85) 이는 祭奠禮의 절차를 골자만 소개한 것이다.

86)「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에 따르면, 祭奠禮가 마무리된 후에는 이어서 조위례가 거행되었다. 곧 弔慰使는 嗣王을 대상으로 칙서를 구두로 전하고 또한 사왕은 사신으로부터 弔慰詔書를 건네받는다. 이처럼 고려전기에는 賜賻 의례까지 포함된 祭奠禮(사제의례)가 거행된 후 연이어 조위례도 치러졌다. 이와 달리 조선초기에는 조위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명은 영내의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황제가 사신을 보내 弔慰를 행하는 예식과 그 의주(「遣使弔王公大臣喪儀注」)를 갖추고 있었지만, 조선에 이 의주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와 맞물려 조선(초기)에서는 해당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이「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를 초록하여 조선 측에 전달하고 조선은 이들 의주를 토대로 사제의례, 사시의례, 사부의례를 거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87) 가령『고려사』권12 세가12 예종 원년 1월 계축. "遼祭奠弔慰使祭肅宗虞宮, 王服深衣, 助奠."

고려전기 당시에 '제전'이라는 용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요·금이 고려의 국상 시에 고려를 상대로 사용하였는데,[88] 이 용어는 국상 시 요와 송 사이에서도 사용되었으며,[89]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가 금에 제전사를 보내기도 하였다.[90] '제전'이라는 용어가 敵禮國인 요와 송 사이에서 사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전'은 군주 상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후술하듯 군주가 신하를 대상으로 해서만 행하는 '사제'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의식이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려전기에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행한 제전례가 기본적으로는 군주 대 군주로서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성격의 의례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전례가 그러한 성격의 예식이었던 까닭에, 고려는 황제국을 상대로조차 사신을 파견하여 제전례를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고려전기에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행한 제전례는 그러한 성격이었다고 해도, 군주 상호 간의 상하 차등적 관계를 반영하여 嗣王을 상대로 칙서를 구두로 전한다든가, 사신이 사왕에게 贈賻詔書를 전한다든가 하는 등의 상하 차등적인 관계를 구현하는 의절을 포함해야 했을 것이다.[91]

고려전기에는 고려가 황제국의 국상 시에 황제국을 상대로 '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 데 반해, 조선은 명의 국상 시에 명을 상대로 '사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명이 조선의 국상 시에 조선을 상대로 '사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말이다. 그러한 까닭은 '제사를 내린다(賜)'로 풀이할 수 있는 사제의 용어 정의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賜祭) 주체가 군신 관계에서 군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92] 사제의 대상은 (서거한) 신하였다.[93] 이처럼 군주가 고인이 된 자

88) 다음 기록에서 금이 고려에 祭奠使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4년 5월 갑오. "金祭奠使大府監完顔亶等來."

89) 가령 『宋史』 卷9 本紀9 仁宗 元年 6월 丁巳. "契丹使來祭奠弔慰."; 『宋史』 卷9 本紀9 仁宗 9년 7월 丙午朔. "契丹使來告其主隆緖殂. 遣使祭奠弔慰及賀宗真立."

90)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9년 3월 무오.

91) 고려전기 '제전' 용어의 사용은 당시 고려와 황제국(책봉국) 상호 간에 '告哀' 용어가 활용된 것과 유사 내지 동일하다고 하겠다. 고려 국왕과 요·금 황제는 군주 대 군주로서 상호 간 告哀使를 파견하였다. 그러면서도 군주 상호 간의 상하 차등적 관계를 반영하여 고려에서는 표문을 통해 고애를, 책봉국·황제국 측에서는 조서를 통해 고애를 행하였을 것이다. 최종석, 앞의 글, 2022 참조.

92) 薛鳳昌, 『文體論』, 商務印書館, 1934, 107면. "若在大臣薨逝, 天子賜祭, 則又謂之諭祭文."

신의 신하(왕공대신)를 대상으로 제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 '賜祭'는 용례 상으로는 원대까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다가 명대에서부터 빈빈히 보인다.[94] 이와 맞물려 명대 들어 諭祭가 등장하였다. 곧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고인이 된 자신의 신하에게 내리는(賜) 제사는 諭祭라 불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니,[95] 諭祭란 군주가 고인이 된 자신의 신하에게 諭示하는 성격의 제사였다.

이렇다고 하면, 조선(초기)에서 賜祭儀禮의 거행은 명 황제가 영내의 신하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국(외신 제후국)의 사망한 군주에까지 사신을 보내 유제를 행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 황제의 사망한 번국 왕을 대상으로 한 諭祭는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영내의 제왕(친왕)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하게 번병으로서 직분을 다한 것을 가상히 여겨 그의 告終을 맞아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96] 주목된다. 이 언급을 필자의 논지에 맞춰 전유해 보자면, 명 황제는 이전과 달리 사망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사신을 보내 諭示하는 성격의 제사인 諭祭를 행하였는데, 번국 왕에까지 적용한 유제는 왕공대신 중에서도 영내의 제왕(친왕)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정리해 보자면, 조선(초기)에서 거행된 賜祭儀禮는 고려전기 祭奠禮와 달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의례의 성격이 부재한 채, 군주가 신하를 대상으로 諭示하며 은전을 베푸는 諭祭란 제사를[97]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선

---

93) 구체적으로는 王公大臣이었다.

94) 중국에서의 변화와 발맞춰 고려말기부터 국왕이 자신의 신하를 대상으로 제사를 내리는 '賜祭' 사례가 확인된다. 사례가 많은 조선시대 '賜祭' 사례는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고, 고려말기 사례인 경복흥을 대상으로 한 '賜祭'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고려사』 권111 열전24 諸臣 慶復興. "辛昌立, 賜祭曰 (…)."

95) 명대에는 다음과 같이 사망한 대신을 상대로 황제가 시호를 내리고 관인을 보내 諭祭를 행한다(遣官諭祭)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明文衡』(四庫全書) 卷78 神道碑 奉天靖難推誠宣力武臣特進榮祿大夫柱國太保寧陽侯追封濬國公謚武靖陳公神道碑銘. "遂薨, 時天順癸未(1463년)七月十六日也. 距生洪武己未二月九日. 享年八十有五. 訃聞, 上震悼輟視朝一日, 追封濬國公, 謚曰武靖, 遣官諭祭加賻及營葬事. 東宮及諸王亦各致祭."

96) 岩井茂樹, 앞의 글, 2005, 139면. 이와이 시게끼는 陳侃의 『使琉球錄』을 전거로 삼아 번국왕을 대상으로 한 유제에 사용된 희생이 牛·羊·豕 각 一頭로 제왕(친왕)을 대상으로 한 유제와 동일하였음을 규명하였다.

97) 이후 시기이긴 하나, 사망한 조선의 세자를 상대로 청의 攝政王은 사자를 보내 致祭를 행한 것과 달리, 청 황제는 사자를 보내 諭祭를 행한 데서도 유제의 특성은 잘 드러난다. 『同文彙考』 原編 卷5 哀禮 攝政王致祭文; 賜祭文 참조.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국왕은 신하의 상에 사신을 보내 諭祭를

국왕에게 내리는(賜) 의례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초기) 賜祭儀禮와 고려전기 祭奠禮 간의 시대 간극은 祭奠禮에서는 사신이 영전에 꿇어앉아 황제의 제문을 읽는 것과 달리 賜祭儀禮에서는 사신이 영전에 서서 황제의 제문을 읽는 차이와도 잘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려전기 祭奠禮와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의례의 성격 면에서 현저히 다르다 보니, 이와 맞물려 각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문도 형식과 성격 면에서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전기 祭奠禮에서 사용된 제문은 상하 차등적 군신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군주의 죽임을 기리고 애도하는 성격의 글인 데 비해, 조선(초기) 賜祭儀禮에서 사용된 제문은 諭祭文이었다.

諭祭文은 천자가 사신을 보내어 下祭하는(尊者가 卑者를 제사하는) 文辭로, 宗室妃嬪에게 내려 親親을 밝히거나 勳臣大臣에게 내려 현인을 현명하게 대하는 것을 밝혀 군신 간의 시종 변함없는 뜻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諭祭文은 '王言의 一體'라고 한다.[98] 諭祭가 명대에 들어서 등장한 만큼, 諭祭文도 자동적으로 명대 이후에서야 확인되는 시대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의 조선(초기) 諭祭文과 고려전기 祭奠禮에서 사용된 제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 생각건대, 영령은 기량이 넓고 외모가 뛰어났다. 경사스럽게도 풍운의 때를 만나 일월의 빛남에 공손하게 의지하여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였고, 번국을 계승하여 다스림을 이어갔다. 바닷가에 봉해진 봉토에서 舊服에 순종하여 조정을 받드는 것에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웠다. 진실로 義方을 타고났으며, 오로지 忠節을 갖추었다.
㉡ 장차 큰 은총을 더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부음을 들은 이래로 은혜로운 포상이 미치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여겼다.
㉢ 특별히 사신을 빨리 보내 奠에 술을 올리게 하니, 貞魂은 진심으로 생각하여 오로지 깊은 뜻을 헤아려 달라.[99]

행하였다. 가령 선조는 사망한 조식에게 諭祭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2월 을미. "上遣禮曹佐郎金瓚, 諭祭于故宗親府典籤曺植之靈.(…)精靈不昧, 歆我馨香."

98) 『文體明辯』 卷21 諭祭文. "按諭祭文者, 天子遣使下祭之謂也. 或施諸宗室妃嬪, 以明親親, 或施諸勳臣大臣, 以明賢賢而示君臣始終之義. 自古及今, 皆用之. 蓋王言之一體也, 故今採而錄之. 若其他臣庶相祭之文, 則別爲別一類云."

99) 『고려사』 권10 세가10 헌종 즉위년 12월 을유.

(2) ㉠ 생각건대, 왕이 일찍이 어질어서 爵位를 이어받아 하늘을 공경하고 큰 나라를 섬김에 시종 한결같은 마음이어서 마땅히 길이 장수하여 왕국에 누림이 있을 것인데, ㉡ 갑자기 몰(歿)하였다 하니 자못 슬프다.
㉢ 이에 특별히 왕에게 '恭順'의 시호를 내리고 관원을 보내어 諭祭하며 아울러 왕세자에게 왕작을 이어받아 봉작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왕가의 제사를 받들게 하니, 왕은 이에 欽服하여 영구히 자손을 편안하게 하라.100)

(1)은 훙서한 고려 宣宗을 대상으로 한 요 황제의 제문이요, (2)는 훙서한 조선 문종을 대상으로 한 명 황제의 제문이다. 이들 제문은 공통적으로 '維宣和五年歲次癸卯三月甲寅朔十四日丁卯 皇帝遣使通議大夫守尙書禮部侍郎元城縣開國男食邑三百戶路允迪 太中大夫中書舍人淸河縣開國伯食邑九百戶傅墨卿 致祭于高麗國王之靈'101) 식의, 언제 누구를 위해 제사를 거행하는지를 밝히는 서두가 생략되어 있다.102)

(1)과 (2)의 ㉠ 부분은 고인의 성품이나 업적을 기리는 내용에 해당한다. (2)의 ㉠은 사망한 前王의 책봉과 충성을 위주로 작성된 데 비해, (1)의 ㉠에는 이러한 내용 외에 성품이나 책봉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적도 수록되어 있다. (1)과 (2)의 ㉡은 황제의 애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1)과 (2)의 ㉢은 제문의 結語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노정한다. (1)의 ㉢에서 요 황제는 사신을 보내 술을 올리며 사망한 고려국왕의 영혼을 상대로 깊은 뜻을 헤아려 달라고 하고 있다. 황제의 제문이라 할지라도 사망한 高麗國王의 靈을 존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103) 이와 달리 (2)의 ㉢은 명 황제의 사망한 조선국왕의 영혼을 상대로 한 시호 등의 하사 및 시종일관 명령을 특징으로 한다. 마치 살아있는 이를 대상으로 황제가 관작을 사여하고 당부를 하는 듯하다. 賜祭, 諭祭에 부합하는 형식과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황제가 사망한 국왕의 靈을 상대로 하사한

100)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0월 임진.
101)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5 受詔 祭奠.
102) 실제 제문에는 서두 부분이 있었을 것이나, 제문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서두가 생략되었을 것이다.
103) 고려전기 제문에는 황제가 사망한 高麗國王을 존숭하는 표현이 드물지 않게 사용된 데서, 원본의 제문은 '尙饗'을 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가령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5 受詔 祭奠에 실린 제문은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원년 6월 계묘 조에 축약되어 기재되었는데, 『고려도경』에 수록된 제문의 '尙饗'은 『고려사』 기록에는 생략되어 보이지 않는다.

것들을 '欽服'토록 한 어구는 유제문의 특징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전기와 조선(초기)에서 한 사례씩 선택해서 비교해 보았지만, (1)과 (2) 제문은 각각 고려전기와 조선(초기)에서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것이었다. 비교 검토한 결과를 일반화해도 대과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국왕의 사망 후 황제국이 행하는 조문 (외교)의례에 초점을 맞춰 고려전기와 조선초기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검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국왕 사후 책봉국에 행하는 (외교)의례뿐만 아니라 이것에 응해서 황제국 측에서 행하는 弔問 (외교)의례에서도,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에는 질적 변화가 놓여있었다. 우선은 명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서 국왕의 사망에 조문하는 의례들인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謚 의례가 전례 없이 명이 조선에 보내준 의주를 토대로 거행된 점이다. 고려전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식 절차(의주)에 따라 황제국 측이 행하는 弔問 (외교)의례를 치른 것과 달리 말이다. 명(영락제)은 전례 없이 그리고 여타 조공국과 달리 조선에 한정해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를 보내주어 준행토록 하였고, 조선 측은 이들 의주에 의거해서 해당 의례를 거행하였다. 특히 명 측이 보내준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謚儀注는 외국이자 제후국인 조선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니라, 명 황제가 영내 王公大臣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抄錄한 것이었다.

이처럼 명 황제가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추려 베껴 조선 측에 전달하고는 이를 준행토록 한 사실은, 명(황제)이 조선의 (전)국왕을 왕공대신과도 같은 존재로 보아 영내 왕공대신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를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명의 움직임은 명조가 예제 차원에서 천자를 정점으로 한 無外・一視同仁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시대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였을 것이면서도, 그러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진 않았을 것이다.

명 측의 행보는 직접적으로는 조선 측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어 수동적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주의 사여는 명의 피책봉국・조공국 가운데 조선에 한정된 일이었는데, 이러한 특별 대우는 국왕의 국상을 당한 조선이 명(황제)을 상대로 告訃와 請謚의 의례를 행한 데서, 그중에서도 특히 시호를 요청한 데서 유발되었을 것이다. 즉 조선이 여타 국가와는 달리, 그리고 왕공대신과도 같이 시호를 요청하자, 명은 이 요청에 응해 시호를 하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 내에서 거행하는 賜謚 의례의 예식절차(의주)까지 보내준 것이다. 이때 명은 조선 내에서 거행하는 賜謚 의례의 예식절차(의주)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작성된 해당 의주를 베껴 보내주었고, 여기에 더해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賜祭儀注, 賜賻儀注도 베껴 함께 보내주었을 것이다.

명이 賜謚儀注를 비롯하여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를 조선에 보내주었기는 하나, 명 측은 당초 이들 의주를 조선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나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조선이 개국 후 처음으로 청시 의례를 행하자 이것에 응해서 사신을 보내 시호를 내렸고 이에 그치지 않고 종래와 달리 급하게 이 의례를 실행하는 절차(의주)로 기성의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초록하여 사신 편에 조선에 전해주었을 것이다. 임기응변 차원의 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와 마찬가지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한 의주인 「遣使致奠王公大臣儀注」, 「遣使賻王公大臣喪儀注」의 抄錄도 함께 마련하여 보내주었을 것이다.

한편 명 측이 賜謚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일은 조선의 請謚에서 유발되었을 것이긴 해도, 이 과정에서 명 측의 의지와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 측이 해당 의주의 반사를 명에 요청하지 않은 데서, 賜謚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것은 어디까지나 명의 판단과 의지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시호 요청에 응해 시호를 하사한다고 해도, 명 측이 관련 의주를 직접 작성하여 보내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데서도 그러하다. 결국, 賜謚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준 일은 조선에 의해 견인되었다고 해도, 의주를 마련하여 조선 측에 보내겠다는 것,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작성된 기성의 의주를 베껴 보내겠다는 것, 賜謚儀注 외에 賜祭儀注와 賜賻儀注도 함께 보내겠다는 것 등은 명 측의 의지와 판단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명 측의 자발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의지의 구현이 영락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이다. 상대적으로 영락제 시기에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예적) 지배질서를 외교무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번국 내에까지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당시에는 조선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 있어, 명(영락제)은 조선이 請諡 의례를 행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시호를 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과 달리 賜諡儀注 등을 마련하여 조선에 보내주었을 것이다. 단 명대적 화이질서의 현실 차원에서의 구현은 문명·예의 가치를 공유하는 共鳴의 상대를 필요로 한 데서, 명(영락제)은 조선을 共鳴의 파트너로 보고 조선을 상대로 해서만 이들 의주를 전달하는 의지를 발현하였을 것이다.

양 시기 간의 또 다른 차이는 起復 의례 시행의 여부이다. 즉 고려전기에는 起復 의례가 거행되었지만 조선(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고려전기에는 책봉국인 요·금이 사신을 보내 起復을 명하면서 官告를 통해 고려 군주를 일차적으로 책봉한다고도 볼 수 있어, 기복 의례가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책봉 의례에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긴 어렵다. 조선에서는 고명의 전달(책봉)이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것은 조문과 함께 이루어진 것과 달리, 고려전기에 기복사가 파견되어 '기복(관고)을 통해 고려국왕의 위호를 준'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복사의 파견 없이 곧바로 책봉사가 온 경우에도 책봉사는 일반적으로 조문사절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늦게 따로 왔다.

특히 양 시기의 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부왕 사망 시 이루어진 기복(관고)이 전제로 한 '解官'에서 해임된 '官'이 즉위(사위) 의례를 통해 부여된 '왕위'였을 사실이다. 고려전기에는 책봉국을 상대로 새로운 군주의 즉위 곧 嗣位의 사실을 알리는 의례인 告嗣位(稱嗣) 의례가 실행된 데서, 책봉국 측이 상정한 父王 사망 시의 해관은 대외로까지 嗣位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사위 의례를 행했어도, 명·청(황제)을 상대로는 조선 내에서 사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請承襲 의례를 거행하였다. 請承襲 의례는 의정부 혹은 전왕의 비가 책봉국(황제)을 상대로 전왕의 후계자만이

있을 뿐 아직 군주의 자리는 비어 있다고 상정한 채 훙서한 전왕의 후계자(세자)인 아무개를 책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례였다. 請承襲 의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명・청(황제)을 상대로는 책봉 전까지는 군주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어서, 설령 명이 기복사를 파견하여 '왕위'를 奪情起復을 하고자 해도 親喪으로 인해 해임될만한 왕위가 부재하였을 것이다. 조선(초기) 당시에는 고려전기에서와 같은 기복사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다.

기복사의 파견 유무 외에 또 다른 이질적인 점은 조선에서는 賜謚 의례가 거행되었으나 고려전기에는 그러지 않은 사실이다. 조선초기에 賜謚 의례는 조선 측의 국왕 시호 요청에 응해 명이 국왕 시호를 하사한 데 따라 거행된 의례인 데서, 고려전기에는 국왕 시호 요청이 아예 없었기에 책봉국 측은 시호를 하사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사시의례도 거행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賜謚 의례는 고려후기와 달리 기본적으로 명 측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抄錄하여 보내준 것을 토대로 거행되었다. 조선은 명 측으로부터 賜謚儀注를 전해 받은 이후로 이를 토대로 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고 상세히 하는 의주 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의주에 의거해서 賜謚儀禮를 거행하였다. 이는 賜祭儀禮와 賜賻儀儀禮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조선의 사시의례가 기본적으로는 태종대 이래로 명이 전달한 賜謚儀注를 토대로 거행된 사실은, 명(황제)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일 순 있어도 영내의 王公大臣을 대상으로 시호를 하사하는 의례(의주)인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외국이자 제후국인 조선에까지 구현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제한적일 순 있어도 명대적 화이질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 측의 의도와는 별개로 천자를 정점이자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 속에서 문명 중화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후 분의를 견지하기 위해, 명이 「遣使冊贈王公大臣儀注」를 초록하여 전달해준 의주를 준용하여 賜謚 의례를 실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명의 의주를 준용하였기에 단순히 명이 전해준 의주를 준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의주를 구체화하고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예에 더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기 황제가 사망한 국왕을 위해 (사신을 보내) 제사를

행하는 의례라 할 수 있는, 고려전기 祭奠(勅祭) 의례와 조선의 賜祭 의례 또한 여러모로 상호 이질적이었다. 먼저, 조선(초기)에서는 사제의례와 사부의례가 구분된 데 비해, 고려전기에는 제전례 내에 사부의례까지 포함되었다.

고려전기 祭奠禮와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의례의 성격 면에서도 현저히 달랐다. 고려전기에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행한 제전례는 기본적으로 군주 대 군주로서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성격의 의례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제전례는 군주 상호 간의 상하 차등적 관계를 반영하여 嗣王을 상대로 칙서를 구두로 전한다든가, 사신이 사왕에게 贈賻詔書를 전한다든가 하는 등의 상하 차등적 관계를 구현하는 의절을 포함해야 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조선(초기)에서 거행된 賜祭儀禮는 고려전기 祭奠禮와 달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의례의 성격이 부재한 채, 군주가 신하를 대상으로 諭示하며 은전을 베푸는 諭祭를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내리는(賜) 의례인 것이다. 이렇듯 조선(초기) 賜祭儀禮와 고려전기 祭奠禮 간의 시대 간극은 祭奠禮에서는 사신이 영전에 꿇어앉아 황제의 제문을 읽는 것과 달리 賜祭儀禮에서는 사신이 영전에 서서 황제의 제문을 읽는 차이와도 잘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려전기 祭奠禮와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의례의 성격 면에서 현저히 다르다 보니, 이와 맞물려 각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문도 형식과 성격 면에서도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전기 祭奠禮에서 사용된 제문은 상하 차등적 군신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군주의 죽임을 기리고 애도하는 성격의 글인 데 비해, 조선(초기) 賜祭儀禮에서 사용된 제문은 군주가 사신을 보내어 사망한 왕공대신을 대상으로 下祭하는 文辭인 諭祭文이었다.

▮ 참고문헌

구범진,『조선시대의 외교문서』, 한국고전번역원, 2013.
김윤정,「고려후기 사여관복(賜與冠服) 행례와 예제(禮制) 질서의 형성」,『역사와 현실』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 467-506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려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_____,『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안기혁,「여말선초 대중국관계와 국왕시호(國王諡號)」,『역사와 현실』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229-262면.
윤승희,「여말선초 對明 外交儀禮 연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_____,「조선 초기 賜賻·賜諡·賜祭儀禮와 明禮의 영향」,『한국학논총』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69-104면.
이승민,「고려 國喪에 대한 거란·금·송의 弔問 使行 양상과 다층적 국제관계」,『한국중세사연구』48, 한국중세사학회, 2017, 191-224면.
_____,「고려시대 국상 의례와 조문 사행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18.
이현진,「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조선시대사학보』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131-163면.
_____,「조선전기 국왕 국장(國葬)에서 명(明) 사신의 의례설행과 그 공간」,『조선시대사학보』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113-148면.
정동훈,「冊과誥命- 고려시대 국왕 책봉문서」,『사학연구』126, 한국사학회, 2017, 149-202면.
_____,「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전달되는 경로」,『동양사학연구』139, 동양사학회, 2017, 219-255면.
최종석,「고려말기·조선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민족문화연구』6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269-309면.
_____,「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_____,「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민족문화연구』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61-220면.
_____,「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蕃國儀注》」,『역사와 담론』86, 호서사학회, 2018a, 139-177면.
_____,「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한국문화』8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b, 227-263면.
_____,「13-15세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사, 2019.
_____,「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이해 심화를 겸하여」,『한국 문화의 정체성』(김형찬 외), 고려대 출판문화원, 2021.
_____,「告哀·稱嗣에서 告訃·請諡·請承襲으로—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책봉국에 행한 외교의례를 비교하며—」,『한국문화』9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宮崎市定,「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東洋史研究』27-4, 東洋史研究会, 1969, 363-385面.
岩井茂樹,「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東洋文化』85, 東京大学 東洋文化研究所, 2005, 121-160面.

檀上寬,『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_____,『天下と天朝の中國史』, 岩波新書, 2016.
豊見山和行,『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 吉川弘文館, 2004.
郭嘉輝,「天下通禮 : 明代賓禮的流傳與域外實踐的紛爭」,『臺灣師大歷史學報』59,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學系, 2018, 1-40面.
薛鳳昌,『文體論』, 商務印書館, 1934.
David M. Robinson,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Abstract】

The Comparison of Diplomatic Rites for condolences by the Chinese Imperial State after the death of the King between the early K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

Choi, Jongsuk*

In this paper, in terms of diplomatic rituals performed by the Chinese Imperial State at the level of condolences after the death of the king, it was clarified that there was a large epochal gap between the early K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 And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is epochal difference were explored.

Specifically, by means of the ceremonial procedure prepared by Koryŏ in the early Koryŏ Dynasty, the Chinese Imperial state performed the diplomatic rites for condolence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the Ming emperor dispatched envoys to Chosŏn to condolence upon the death of the king, and the envoys executed *Saje* (賜祭), *Sabu* (賜賻) and *Sasi* (賜諡) ritual, which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eremonial procedures unprecedentedly prepared by the Ming side and sent to Chosŏn. And I tried that this fact was highlighted and its meaning was clarified. In particular, it was noted that the action of the Ming side was confined to Chosŏn, and in fact, they were passively acted upon by the Chosŏn side's *Choengsi* (請諡) and *Kobu* (告訃) ritual.

Next, while *Kibok* (起復) ritual was held in the early Koryŏ period, it was not like that in early Chosŏn peri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iods was highlighted and the meaning was explored.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how the difference in the external status of the 'enthronement' held in Korea during each period wa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Kibok* (起復) ritual was performed. Another disparate point is the fact that *Sasi* (賜諡) ritual was held in Chosŏn but not in the early Koryŏ period, and this difference and its context were investigated.

Lastly, various heterogeneous aspects between *Jejŏn* (祭奠) ritual in the early Koryŏ period and *Saje* (賜祭) ritual in Chosŏn were reviewed. In particular, *Jejŏn* (祭奠) ritual in the early Koryŏ period was ceremonies that reflected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and at the same time commemorated deceased foreign monarchs by the Chinese emperor on the premise of a relationship between monarch and monarch. In contrast, it was found out that *Saje* (賜祭) ritual in the early Chosŏn period was a ceremony in which the Ming emperor sent an envoy to give praise and instructions to the Chosŏn king. In addition,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 in aspects were also explored.

Keywords: *Saje* (賜祭) ritual, *Sabu* (賜賻) ritual, *Sasi* (賜諡) ritual, *Kibok* (起復) ritual, *Jejŏn* (祭奠) ritual.

접수일: 2022.12.09.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3.